

보험가액의 평가

1. 사고개요

1986. 8. 9 보험계약자 S와 보험자 A 사이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 소재하는 공장건물 및 동 건물내에 수용된 기계 및 시설물 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보험금액은 건물 5천4백만원 기계 및 시설물 8천4백만원, 보험기간은 1986. 8. 9부터 1989. 8. 9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풍수해담보특별약관 첨부)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87. 7. 15 경부터 태풍 셀마호의 영향으로 집중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여 보험목적물 소재지 인근의 경호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공장건물내부가 침수되어 공장일부와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 및 시설이 침수, 손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자 A는 본 건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K손해사정(주)이 산정한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코자하였으나 보험목적의 질권자인 신청인 C가 손해액 산정과정에 있어서의 보험가액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 C는 피신청인 A가 건물의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순관

〈한국보험공사 분쟁조정국 대리〉

법인세법상의 내용년수(콘크리트조 슬라브공장 40년, 조적조공장 35년, 조적조사무실 50년)에 잔존가치율 1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법상의 내용년수에 1.5배 가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높힌 것이나 잔존가치를 20%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기계시설에 대한 보험가액도 건물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한국감정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내용년수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신청인 A가 보험가액을 국내제조자의 신품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내용년수를 17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라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이에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 1천7백19만2천3백51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을 하였다.

이에대해 피신청인 A는 보험가액은 건축비를 산출한 후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내용년수는 최소한의 수치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동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법상의 내용년수에 1.5배를 가산하여 적용(조적조 60년, 콘크리트조 75년)하고 잔존가치를 20%로 한 것은 타당하며, 기계의 보험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국내제조업자의 신품재조달가격을 제시받아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여 지급보험금으로 1천1백 61만2천7백53원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판정내용

본 건 화재보험분쟁사건을 심의한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기각판정하였다.

…당사자가 제출한 K손해사정(주)의 본 건 풍수해사고에 관한 침수사고 이재사정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 및 기계류에 관하여 산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내역을 살펴보건대 우선,

건물에 관하여는 실사를 통하여 건물의 구조·면적·재료 등을 조사한 후 신축비를 산출하고, 조적조건물에 대하여는 내용년 수 60년, 경년감가율 1.33%, 경과 후 잔존가치 20%를 기준으로, 콘크리트조건물에 대하여는 내용년수 75년, 경년감가율 1.07%, 경과후 잔존가치 20%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였으며……(중략)…… 다음으로 기계류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내제조자에게 신품재 조달가격을 제시받아 이의 타당 성여부를 조사한 후 동 기계설비가 섬유공업중 합성섬유 신축가공사·제조, 방적 및 직물설비로 보아 내용년수 17년, 경년감가율 5.29%, 경과후 잔존가치 10%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하였고, 아울러 손해액은 대부분의 기계류가 수침손상이므로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은 일용 이 건 풍수재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의 가액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액 및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 위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이 보험약관 제13조(지급 보험금의 계산) 등 해당규정에 의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4. 후설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실제손해 만큼의 실손보상을 받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

므로 보험가입자는 실제손해 이상의 보상을 받거나 실제손해 이하로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피보험자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최고한도액으로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취득을 방지하며 실손보상을 가능케하고 아울러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은 평가대상물건과 동종의 용도·구조·재료 등을 지니고 있는 물건을 신축하거나 재조달하는 데 필요한 신축가액이나 재조달가액을 구하고 동 신축가액이나 재조달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동 감가공제액 산정을 위한 기본인자로서는 내용년수와 최종감가율(잔존가치율)이 필요하게 되며 내용년수를 몇년으로 보고 최종감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험가액이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어 전부보험이나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정 내용년수나 최종감가율을 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조정을 시도하여 당사자간의 상호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지만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판정에 이르게 된 것이나 K손해사정(주)의 사정내역을 반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동 사정내역을 근거로 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단 기각 판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상법이나 약관에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인수시나 보험사고시에 대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가액의 평가기준이나 방법의 정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과거부터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내용년수에 일률적으로 1.5배내지 2배를 가산하여 적용하여 왔고 최종감가율은 건물 20%, 기계 10%로 책정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세법상의 내용년수는 세무회계상의 일정기준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법상의 내용년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내용년수는 그 근거가 뚜렷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험사고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사정과 관련하여 분쟁의 발생소지가 내재되어 온 실정인 것이다. 다만 최근 보험업계에서 보험가액평가기준을 제정·시행하여 문제점이 적지 않게 해소된 점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건축공법의 다양화·신소재개발·신기계출현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동 평가기준은 앞으로도 범업계적으로 관계전문가의 협의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보완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 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거나 손해를 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의 공신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